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조직법이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 10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
부처(기후에너지환경부) 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1. 00. ~ 1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6항 중 “환경부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⑤ (생략)	제34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4항 본문 및 별표 8에 따라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(6급 3명, 7급 1명)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, 2명(6급 2명)은 <u>환경부</u> 소속 공무원으로, 2명(6급 2명)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